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향

글 |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

1. 보편적 의무 제도의 필요성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꼽으라고 하면 답하는 사람의 연령, 성별, 생활정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

주로 첨단 서비스를 즐기는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동 중 업무가 많은 회사원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TV를 좋아하는 대학생의 경우 위성 DMB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산골이나 오지에 사시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첨단의 통신 서비스 보다는 시내전화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의 저렴한 이용을 원할 것이다.

이렇듯 사람에 따라 필요한 정보통신 수단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현대인에게는 전화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우며, 모든 국민이 시내전화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은 현대복지국가에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통신회사로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통신서비스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통신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보편적 의무제도의 연혁 및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보편적 의무제도는 통신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도입되고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었던 KT의 민영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민영화시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의 기본통신서비스 제공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19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9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반영 및 '보편적역무손실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제정되어 2000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96년을 전후하여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새로이 통신법에 반영되었으며, 운영되는 방식은 각 국가의 통신환경에 맞게 발전되어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내전화만을 보편적 의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을 고려하여 전국평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긴급전화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보편적 의무 제공자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독일·스페인 등은 보편적 의무 제공으로 인한 제공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별도로 보전하지 않고, 프랑스·이태리 등은 동 손실에 대해 여타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여 보전하고 있다.

3.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①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

보편적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 등 유선전화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다.

시내전화와 시내공중전화는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단으로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품질과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농어촌, 도서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서비스 제공비용이 높아져 공급사업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므로 제공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 역무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KT를 지정하고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여 보전하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저소득층·국가유공자 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신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통신 제도이다.

이는 중증 장애인 개인 및 장애인 수용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중 부상자 등에 대하여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등의 통화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보전절차 없이 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체부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서 화재, 조난신고 번호인 119 등과 같이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한 특수전화서비스이다. 특수전화는 각 기간통신사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별도의 요금부과나 손실보전 절차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 현황

보편적역무 대상	제공 사업자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	KT
특수번호(112, 113 등) 전화서비스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T, KT파워텔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T 및 4개 무선호출사업자

② 보편적 역무 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 및 손실보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 품질 및 요금수준과 기술적 능력을 참작하여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거쳐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를 지정하며, '04 ~ '05년에 보편적 역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지정된 보편적 역무 사업자 중 여러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수번호서비스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전을 하지 않으며,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KT가 유일하게 지정된 시내전화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손실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손실보전은 시내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실부분을 분담하여 보전하고 있다.

시내전화와 시내공중 전화에 대해서는 각각 고비용 지역의 제공손실의 70%, 90%를 보전하고, 도서통신은 제공손실의 90%, 선박무선은 제공손실의 100%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선박무선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손실의 전액이 아닌 일정부분만을 보전함으로써 제공사업자의 경영효율을 유도하고 있다.

4. 보편적서비스 발전방향

보편적서비스제도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술발전 정도·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공공의 이익과 안전·사회복지의 증진·정보화의 촉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중 요금감면 서비스는 대상자 확대와 부담 사업자의 부담확대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등 유선전화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는 향후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의 개념은 기술발전과 보급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에는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첨단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비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가지고 있다.

통신서비스는 과거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에서 지금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 통신서비스 제공 못지않게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한 역할이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고르게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편서비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K]